



파견직원명단 및 기업정보의 영업비밀 해당성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07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11년(와) 제933호
판결 일자	2000. 4. 25.	판결 결과	원고 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산와 코퍼레이션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테크노 스이코, 2. C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4항		
영업 비밀	파견직원과 파견기업에 관한 정보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02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회사(테크노 스이코)는 인력파견업체이며, 피고인 C는 원고 회사의 영업부에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 C는 원고회사에 재직하며 알게 된 파견직원 및 파견기업에 관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원고회사 소속의 파견직원을 퇴사시키고 피고회사 소속으로 취직하는 동시에 본인도 피고회사에 이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인 C가 가져간 정보는 영업비밀이며, 전 원고소속이자 현재 피고소속인 직원들의 파견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직원 명단 및 기업정보는 파견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파견함으로써 얻은 가치 있는 정보이며, 이는 영업비밀이다.

해당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열쇠 등의 제한된 수단이 필요하고, 직원은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영업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해당 정보는 일반적인 취업정보이며, 파견직원의 투입 단가 등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로 영업비밀이 아니다.

해당 정보는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긴 하였으나, 업무시간 중에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고, 따라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던 것이 아니므로 영업비밀로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04 판결 요지

파견 직원과 파견 기업에 관한 정보는 사업활동에 유용한 영업상의 정보이며, ‘공공연하게 알려진 정보’로 볼 수 없다. 해당 정보가 널리 알려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기업에, 어떠한 용역 단가로 투입되어 파견될 것인가는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로 볼 수 없으며, 직접 이를 알아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정보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시세라는 것 또한 불분명하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제본 파일은 사무실 내의 캐비닛에 놓여, 원고의 직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었고, 특별히 원고의 기밀 사항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일반적인 관리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밀보호의무에서의 기밀에 해당 정보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또한 부족하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4항이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비밀관리성을 명시한 취지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수집하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어느 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인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해당 정보는 비밀관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05 Key Point

영업상 중요한 성질의 정보라 하여 영업비밀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

종업원과의 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통해 기밀보호의무를 주장하려면, 우선 영업비밀을 명확히 하여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